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24

발의연월일: 2025. 2. 17.

발 의 자:이만희·서천호·권성동

강선영 · 김기웅 · 김소희

김용태 • 권영진 • 구자근

신동욱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,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, 그 후 3년간은 50%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은 확대되는 추세로 해당 지역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75조의5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의5제1항제1호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"을 "2 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75조의5(인구감소지역에 대한             | 제75조의5(인구감소지역에 대한   |
| 감면) ①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             | 감면) ①               |
| 특별법」에 따라 지정된 인구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(기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포함한다)하기 위하여 취득하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세를 감면한다.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1. <u>2025년 12월 31일</u> 까지 취득 | 1. 2028년 12월 31일    |
| 세를 면제한다.                      | ·.                  |
| 2.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             | 2                   |
| 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202             | <u>2023</u>         |
| 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         | 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|
|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              | <u> 31일</u>         |
| 당한다)에 대해서는 재산세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며,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② ~ ④ (생 략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